시민안전공제규정

2017. 7. 12. 제정
2018. 11. 2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정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민안전공제사업(이하 “시민안전공제”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민안전공제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업의 정의) 시민안전공제라 함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공제회가 보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29.>

제4조(업무의 분담) ①공제회는 공제등록, 회비수납 및 피해에 대한 손해조사, 공제금 결정 및 지급 등 사업운영과 재보험 가입 등 사업의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29.>
②회원은 공제등록 신청에 따른 시민안전공제회비(이하 “공제회비”라 한다)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11.29.>
④ (삭제) <2018.11.29.>

제5조(공제등록 대상) 회원이 공제등록 할 수 있는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군·구민으로 한다.

제6조(공제등록 절차) ①회원은 공제등록 대상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제등록신청서에는 가입담보 및 담보별 가입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등록 당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제회에 일괄등록(이하 “정기등록”이라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간에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등록(이하 “수시등록”이라 한다)신청할 수 있다.
③공제회는 시민안전공제와 관련하여 재보험 또는 단체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시민안전공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회원이 공제등록 신청한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④ (삭제) <2018.11.29.>

⑤ (삭제) <2018.11.29.>

제7조(공제기간) ①정기등록의 공제기간은 매년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로 한다.
②수시등록의 공제기간은 공제등록이 접수된 날 익일 또는 회원이 지정한 날의 0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 또는 회원이 지정한 날의 24시까지로 한다.
③공제기간이 만료됨에도 변경, 해지에 대한 회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기등록으로 자동 갱신한다.

제8조(공제회비 등) ①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등록한 시민안전공제 회비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제회비는 회원이 선택하는 담보별 요율을 기초로 가입금액을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1.29.>
③공제회비의 납부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11.29.>
1. 정기등록분은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수시등록분은 등록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1,2월 등록분은 3월 31일, 12월 등록분은 12월 31일 이전으로 한다.
3. 공제회비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9.>

제9조(손해의 통지) 회원은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제회 또는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제10조(보험금 청구) 공제금 청구사유가 발생하여 회원이 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1. 공제금 청구서 <개정 2018.11.29.>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기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개정 2018.11.29.>

제11조(보험금 지급) 공제회는 공제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공제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제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동 기간 내에 마칠 수 없거나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추정되는 공제금의 50% 이상을 가지급 공제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

제12조(공제금 보상한도액)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금은 공제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8.11.29.>

제13조(공제등록의 해지 및 환불) ①공제등록 내용의 변동 및 그밖에 공제등록의 해

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등록회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접수한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제가입이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공제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제14조(공제등록의 무효) 공제등록을 신청할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가입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회비를 환불한다.

1.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공제가입을 신청할 때에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 대리인이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공제회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5조(적립금 조성) 시민안전공제사업의 적립금은 시민안전공제회비, 이식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조성한다.

제16조(위임 및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상법 등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235호, 2017.7.12.>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3호, 2018.11.29.>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시민안전공제규칙

제정 2017.07.26 개정 2018.03.29
개정 2018.10.04 개정 2018.12.21
개정 2019.03.20 개정 2019.12.19
개정 2020.12.01 개정 2021.12.06
개정 2022.05.10 개정 2022.10.25
개정 2022.12.29 개정 2023.05.23
개정 2023.11.07 개정 2023.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시민안전공제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약관 및 요율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적용) ①시민안전공제규정 제3조에 의한 약관은 [별첨1]에 의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3.29., 2018.10.04., 2018.12.21., 2019.03.20., 2019.12.19., 2020.12.01., 2021.12.06., 2022.05.10., 2022.10.25., 2022.12.29., 2023.05.23., 2023.11.07., 2023.12.27>
②위 제1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손해보험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공제등록 대상) 시민안전공제규정 제5조에 따른 공제등록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다.

제4조(공제회비의 적용) ①시민안전공제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공제회비는 [별첨2]의 요율서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03.29., 2018.10.04., 2018.12.21., 2019.3.20., 2019.12.19., 2020.12.01., 2021.12.06., 2022.10.25., 2022.12.29., 2023.05.23., 2023.11.07>
②위 제1항의 요율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험요율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사와 협의한 협의요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공제회비의 납부유예) 회원이 예산 미확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부과된 공제회비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납부유예는 공제등록기간 중으로 한다.

제6조(공제등록 및 해지) ①공제회는 시민안전공제규정 제6조에 의하여 회원 중 지

방자치단체 로부터 [별첨3]의 공제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공제등록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3.20., 2020.12.01., 2021.12.06., 2022.10.25., 2022.12.29., 2023.05.23., 2023.11.07>

②공제회는 시민안전공제규정 제13조에 의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사고처리 및 공제금 지급) ①공제회는 시민안전공제규정 제9조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사고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조사하고 공제금 지급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2.21.>

②공제회는 공제금의 지급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4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 신속한 사고처리 등을 위해 손해보험사 또는 손해사정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2.10.25.>

제8조(참여기관의 선정등) ①기관의 선정은 공제사업 개발 참여, 재무건전성, 신용평가등급 참 여요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참여기관의 지분은 신용평가등급, 사업안정성, 재무건전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매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장애가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에 대하여 참여 제한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2.21.>

부 칙<2017.07.26. 규칙 제2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29. 규칙 제3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04. 규칙 제3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1. 규칙 제4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21. 규칙 제4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9. 규칙 제4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01. 규칙 제4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06. 규칙 제4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5.10. 규칙 제5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5. 규칙 제5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9. 규칙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5.23. 규칙 제5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07. 규칙 제5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7. 규칙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